

광주지방법원 2022. 6. 14 선고 2022가단5003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6. 1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14,907,0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4,907,0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는 주식회사 D(이하 'D'라고 한다)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장기카드대출을 받았으나, 신용카드대금 및 장기카드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였다. 원고는 2021. 4. 21. D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D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, 그 무렵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C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.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차전1227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'C는 원고에게 14,791,567원과 그중 9,753,83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21. 11. 30. C에게 송달되어 2021. 12. 15. 그대로 확정되었다. 2022. 1. 5.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합계 14,907,009원이다.

품 목	일자	대출원금(원)	잔존원금(원)
신용카드	2013. 10. 23.	6,253,808	6,253,808
장기카드대출	2016. 7. 15.	14,000,000	3,500,024
합 계			9,753,832

나. 한편, C는 2018. 11. 14.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8. 11. 9.자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 이었는데,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5,000,000원이고,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.

순위번호	채권최고액(원)	채무자	근저당권자	비고
10	84,000,000	주식회사 E	중소기업은행	
11	96,000,000	C	주식회사 F	
13	42,000,000	주식회사 E	중소기업은행	
14	20,000,000	C	G	2020. 6. 11. 말소
합계	242,000,000		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(1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),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다(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8다4926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가 2018. 11. 9.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. 11. 14.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(2)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,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,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,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

2001. 9. 4.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65,000,000원인데,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242,000,000원으로서 그 잔액이 23,000,000원(= 265,000,000원 - 242,000,000원)인 사실1),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순위번호 제14번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. 6. 11. 말소된 사실, 2022. 1. 5.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합계 14,907,009원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잔액과 원고의 채권원리금 중 적은 금액인 14,907,0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,907,0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

C가 2013. 10. 23.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한편 C가 2016. 7. 15. D로부터 장기카드대출을 받은 사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고,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가 2020. 1. 28.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1270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. 2. 3.자 지급명령이 2020. 3. 31.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여기에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된 신용카드대금과 별개의 장기카드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(2) 피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, C로부터 그 채권의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

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,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피고(남편)와 C(처)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.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

같이 피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,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).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을 포함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채무초과 상태의 C가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성준

별지

1)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채권최고액보다 적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23,000,000원을 초과한다.